김제시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2023년 제1회 김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 공고

2023년 제1회 김제시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정책지원관)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2023년 1월 16일

김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Ⅰ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등)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Ⅱ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직급	채용인원	채용기간	근무시간	근무처	담당 직무내용
정책 지원관	**일반임기제 7급** (지방행정 주사보)	**2명**	2년	주40 시간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	❍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조사·연구 ❍ 그 외 지방자치법 제47조 ~ 제52조,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등

※ 근무실적에 따라 총 5년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Ⅲ 응시자격요건

❍ **응시자격 제한**(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① 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1.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2.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3.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4.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5.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5의2.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응시연령 : 만 20세 이상인 자

❍ 성별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거주지 제한 없음

❍ 임용 자격기준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임용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정책지원관	▸ 「지방공무원법」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임용 기준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임용예정 실무경력 인정범위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alio.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연구소 등에서 행정, 법률지원, 대외홍보, 정책개발, 예산, 결산, 감사, 조사와 관련해 근무한 경력**

※ 상기 자격기준 이상의 관련분야 학력(석사, 박사 등) 및 자격을 취득한 자는 자격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학위취득 과정은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 **해당분야 응시요건 관련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이 있어야 하며, 발급담당자의 연락처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한 경우 서류전형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해당 분야임을 확인받아 제출**(근무기간, 직위(급), 담당업무 기재)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경력요건으로 응시할 경우 **관련 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

Ⅳ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계급 상당 하한액 적용

※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채용분야	연 봉 액	산 출 기 초	비고
정책지원관 (일반임기제 7급)	**45,237천원**	임기제공무원7급(상당) 하한액	

❍ 연봉 외 급여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단,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지급방법 : 공무원 보수 지급방법에 준함.

Ⅴ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경력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통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서류전형 기준 : 업무연관성, 경력, 전공, 기타 업무능력평가(세부내용 비공개)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성실성, 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성적이 우수한 사람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함

Ⅵ 시험일정

❍ 채용공고 : **2023. 01. 16. ~ 2023. 01. 27. 18:00까지** (12일간)

❍ 원서접수 : **2023. 01. 25. ~ 2023. 01. 27. 18:00까지** (3일간)

- 접수장소 :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 의정팀 1층 사무실
  (전라북도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의회)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장소에 제출
  (방문제출이 어려울 경우 사전에 의정팀으로 연락바람)
- 응시원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 출력 사용 가능
- 평일 근무시간인 09:00~18:00 내에만 접수가능(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1차 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02. 03.(금) * 예정**

-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 **2차 시험(면접시험) 일정,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임용후보자 등록은 추후 대상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통지**

❍ 임용예정일 : 2023년 2~3월 예정이나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Ⅶ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2호)

- 응시수수료 : 김제시 수입증지 6.7급 상당 : 7,000원
- 구 입 장 소 : 김제시청 1층 민원실 구입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3호)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관련 분야만 기재**
- 증빙서류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기재**(증빙자료가 없는 경력 인정 불가)**

❍ **자기소개서**(별지서식 4호) **및 직무수행계획서 각 1부** (별도서식 없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부**

- 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명서 발급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특히 담당업무가 지원하는 분야의 실무경력 인정범위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당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 미제출시 불인정)

○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 **주민등록초본** 1부(주소변동내력 기재, 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포함)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원본 반드시 지참 후 확인)

○ **관련분야 연구실적 및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5호)

☞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
-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
- 모든 증명서는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사본으로 제출하는 서류는 서류접수 시 원본을 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는 반드시 한글번역본(공증필) 첨부

Ⅶ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누락 또는 연락불능, 자격미달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 (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지원자는 기 제출 서류로 갈음.

- 모든 증명서는 원본(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발급분) 제출이 원칙이나, 부득이한 경우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은 사본제출 가능하며, 공고일 이전 발행된 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 기재) 내의 서류이어야 합니다.
- 공고한 내용을 변경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변경사항을 김제시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공고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공고 없이 면접순위에 의거 차순위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부 서	연 락 처
접수·채용 업무 총괄	김제시의회 의회사무국(의정팀)	063-540-2762